
**「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2025. 2.

환 경 부

목 차

I. 총칙	1
II.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5
III. 보조금 지급 및 충전시설 설치 기준	10
IV. 충전시설 운영 및 관리	18
V. 보칙	23

1. 목적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국가로부터 자금을 보조받는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8항에 따라 환경부(한국환경공단·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집행지침 관련 규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른다.

3. 정의

- ①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 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② “충전시설”이란 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특별한 제한없이 사용 가능한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위치 및 충전기 상태, 이용 가능자의 범위 등에 관한 정보 실시간 제공
 2. 이용자가 사용한 전력량, 사용 시간 등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정산할 수 있는 기능 지원

3. 충전시설 이용자가 충전시설 이용요금을 즉시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QR결제 등 결제수단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 및 충전기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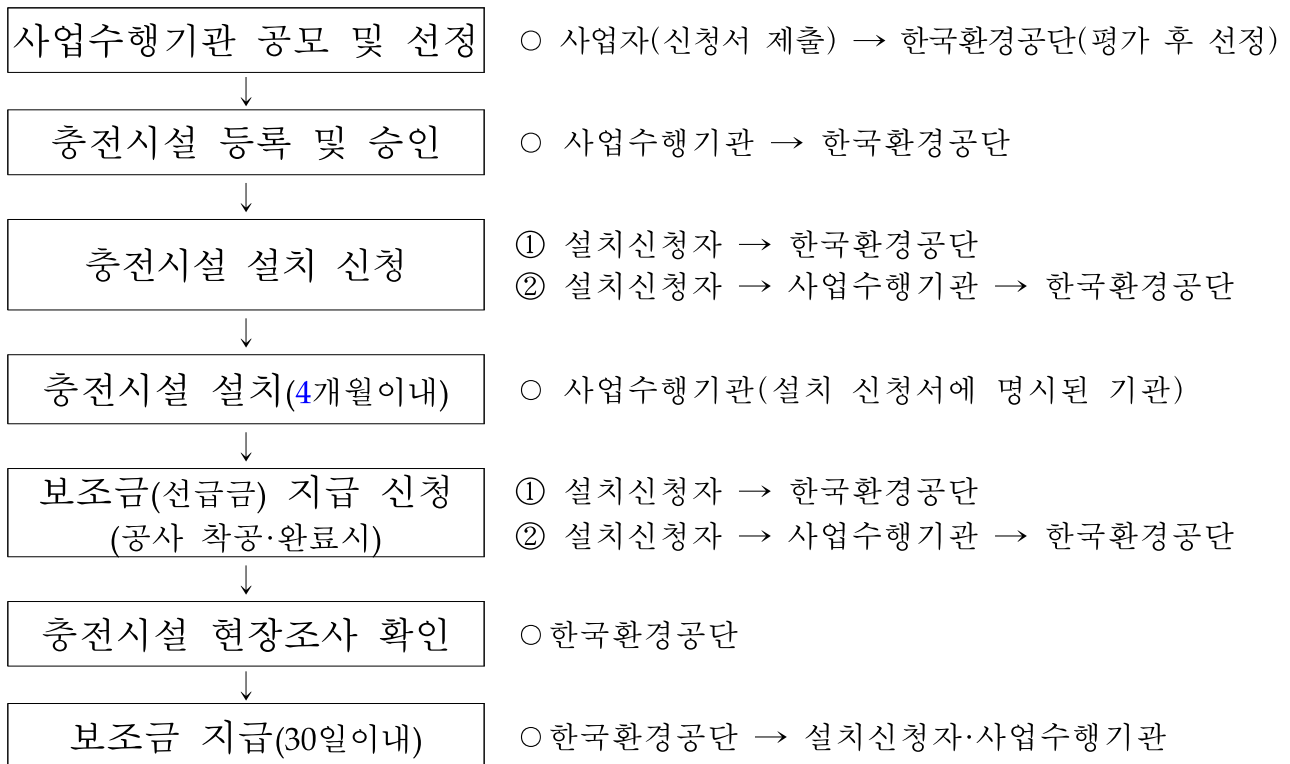
1. “완속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등에 전기를 충전하는 시설로 출력값이 최소 3kW 이상이고 최대 40kW 미만인 충전시설을 말한다.
2. “키오스크 충전기”란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단말기로 다수의 충전시설을 제어하는 정보전달 시스템이 포함된 충전기를 말한다.
3. “전력분배형 충전기”라 충전하는 동안 전력부하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충전기를 말한다. 다만, 전력분배 후에도 출력값이 3kW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4. “스마트 제어 충전기”란 충전 중 전기차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고 PnC, V2G 등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통신기능(PLC 모뎀)을 갖춘 충전기로 [별표 9]의 스마트 제어 충전기 세부 설치기준을 만족하는 충전기를 말한다.

* 전기차 VIN(또는 배터리 팩 ID), 배터리 충전정보(SOC), 열화정보(SOH), 배터리 셀전압, 팩전류, 모듈온도 등

** 전기차 배터리 SOC가 100%일 때는 충전을 종료해야 하며 충전이 종료된 후에는 자동으로 재충전되지 않도록 재충전 방지 기능이 있어야 하며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 스스로 충전량 설정(충전기 또는 앱) 기능을 갖추어야 함

- ④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6항에 따라 설치한 전산망을 말한다.
- ⑤ “사업수행기관”이란 충전시설의 설치 및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충전사업자로 환경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 ⑥ “불편민원신고센터”는 충전기 고장 등 불편민원을 사용자로부터 접수하고 해당 충전시설 운영기관에 송부·조치하게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등 충전시설 이용 불편민원을 총괄 관리한다.

4. 보조사업 추진절차



5. 운영주체별 역할

- (환경부)
 - 충전시설 구축 계획 수립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개정
 - 충전시설 구축사업 지도·점검, 운영 실태 및 결과 평가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총괄 관리
-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사업수행기관 관리
 - 보조금 집행 업무 수행
 - 보조금 지원시스템 운영
 - 충전시설 사용요금 관리
 - 충전시설 불편민원신고센터 운영

○ (사업수행기관)

-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설치할 충전기 등록
- 충전시설 설치신청 대행, 충전시설 설치 현장 사전컨설팅, 충전 시설 설치공사, 보조금 신청 및 수령 대행
- 충전시설 운영 및 사후관리

○ (설치 신청자)

- 충전시설 설치 신청
- 보조금 지급 신청, 충전시설 운영 및 사후관리

1. 사업수행기관 신청 자격

- 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12의5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 ② 충전기 이용 현황(이용 가능 여부, 충전량, 회원 관리, 고장 여부, 고장 접수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동 시스템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연계 가능한 자
- ③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충전시설 사용 불편 민원 응대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한 자
- ④ 충전시설 운영시스템 및 충전기(보조금 지급 대상에 한함)에 대하여 OCA(Open Charge Alliance)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 통신 규약 1.6(OCPP 1.6) 인증을 완료한 자

2.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1) 사업수행기관 신청서류 제출 [충전사업자]

사업수행기관 공모일에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모기간 내에 한국환경공단 제출(별도 공모절차 진행)

- ① 사업수행기관 공모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② 사업수행기관 신청 제안서*[별지 제2호 참고] 및 조건표[별지 제3호서식]

* 제안서는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파일(PDF)로 제출

- ③ 사업자등록증, 전기신사업자등록증
- ④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⑤ 법인 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⑥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⑦ 충전기 설명서(모델명 등), 원가계산보고서
- ⑧ 전기차용 충전기 제조업체와의 계약서 및 공장등록증
- ⑨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형식승인서(계량에 관한 법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선택) 등 충전기 관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⑩ OCA에서 발급하는 OCPP1.6 인증서(운영시스템 Full Certificate, 충전기 Subset Certificate)
- ⑪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에서 발급한 「스마트 제어 충전기 배터리 정보교환 프로토콜 (ISO/IEC 15118) 및 시험 기술기준」과 「스마트 제어 충전기와 충전기 관리시스템간 정보교환 프로토콜(OCPP 1.6) 및 시험 기술기준」 시험성적서
- ⑫ 전담 인력(H/W 부문, S/W 부문, A/S 부문) 재직·경력증명서, 보유 자격증,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 관련 인력에 대한 증빙자료
- ⑬ 콜센터 및 정산시스템 구축 여부 증빙자료
 - ※ (위탁 운영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인감날인)
 - ※ (직접 운영시) 콜센터 및 정산시스템 인력 재직(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⑭ 정량평가 항목 자체 점검 점수표[별지 제4호 서식]
- ⑮ 제안서 평가 요약본(20페이지 이내)
- ⑯ 기타 사업수행기관 제안서 정성·정량 평가를 위한 증명 서류

2) 신청서 평가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한국환경공단]

- ① 충전시설 설치 관련분야 7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역량, 충전시설 운영 전문성, 사후 관리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한다.

- 평가 배점 : 정량적·정성적 평가 100점, 가·감점(+2~-6)

- ② 사업수행기관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에 따르며, [별표7]의 “가. 사업수행기관선정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인 사업자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 점수는 최종 계산 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최종결과에 가·감점을 적용한다. 평가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③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에 사업수행기관으로 등록*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을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지원시스템에 등록하며, 이후 사업수행기관별 담당자가 회원가입 후 사업 진행

** 사업수행기관에서 충전소 위치 및 상태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무공해차통합 누리집(ev.or.kr)에 연계한다. 세부 연계 정보는 환경공단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외한다.

< 세부 연계 정보 예시 >

- 1) 충전기 상태정보 : 고장, 고장 수리중, 사용가능, 사용불가, 사용중 등
- 2) 충전기 이용정보 : 충전시설 위치정보, 충전소명, 충전시설 기기번호, 충전일자, 충전 시작시간, 충전 종료시간, 충전 전력량, 충전시설 사용요금(최고, 최저, 시간대별 상세 내역) 등
- 3) 충전중 배터리정보 : 전기차 VIN(또는 배터리 팩 ID), 배터리 충전정보(SOC), 열화정보(SOH), 배터리 셀전압, 팩전류, 모듈온도 등

*** “지역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수행기관은 해당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선정

3. 사업수행기관의 제재사항

- ① 특별한 사유 및 한국환경공단 승인 없이 충전시설 설치기간(4개월, Ⅲ.보조금 지급 및 충전시설 설치 기준·4.충전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집행 절차·1)기본원칙)을 초과하거나 미설치(또는 취소)한 경우 설치신청 접수 및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② 운영중인 충전기의 위치 및 상태정보(Ⅳ.충전시설 운영 및 관리·4. 충전시설 이용정보 및 상태정보 공유·④)를 3일간 연속으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단, 재해 등의 사유로 사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외)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③ 본 지침의 [별표8]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외주 모집 대행사를 통해 충전시설 설치 신청자를 모집할 경우 다음 연도 사업수행기관 선정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외주모집 대행사를 통해 충전시설 설치 신청자를 모집하여 등록을 대행하는 공모방식은 “충전시설 설치사업 신청 공모” 내용에 명시한 경우만 가능함
- ④ 사업수행기관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시정 또는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설치신청 접수 및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⑤ 사업수행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외되며,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⑥ 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일 현재 전기차 및 충전기 보조금 사업 관련 법령 위반 사실로 조사·내사·수사·고발 등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 또는 행정심판 중인 경우는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제한받을 수 있다.

- ⑦ 경찰 등 국가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 결과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부정수급임이 확인되어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를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⑧ 보조금 사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 또는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처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사업수행기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⑨ 본 지침의 [별표9]에 따른 스마트 제어 충전기 정보교환 프로토콜 및 충전제어 기능 업데이트를 기한 내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기지급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⑩ 사업수행기관은 운영 중인 충전시설에 대하여 [별표 6]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기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를 7월(상반기) 및 차년도 1월(하반기)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제출)해야 한다. 점검 결과를 미제출하는 경우 설치신청 접수 및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⑪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 출력을 임의로 낮추어 운영할 경우 설치신청 접수 및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력망 안정화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충전속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해당 시간의 충전요금 인하 등 합리적인 방안 제시).
- ⑫ 사업수행기관은 정기점검, 신속한 고장수리 등의 조치를 통해 운영가능시간(Uptime, $\frac{\text{사용가능시간}(h) + \text{사용중 시간}(h)}{365 \times 24h}$)을 매년 9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운영가능시간이 95% 미만인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 보조금 지원 대상

-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 공용충전시설이란 사용자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이용 가능한 충전시설

- 다만, 공동주택, 학교시설 등 출입자를 제한하거나, 소상공인이 영업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화물 운송사업자) 전기차를 신규 구매('24년 7월8일 이후 등록 차량에 한함)하고 충전기 설치 부지와 주차면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한되더라도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시 지원 가능하다.

2. 보조금 지원 대상 충전시설

- I.총칙 - 3.정의 - 제3항에 따른 충전시설로 한국환경공단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충전기로 등록 후 본 지침에 따라 설치함으로써,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는 충전시설
- 통신기능(PLC 모뎀)을 갖추고 충전 중 전기차 배터리 정보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고 PnC, V2G 등의 편의기능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동일 장소에 설치하는 충전기 수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충전기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만 보조금 지원

* ① 설치비용은 충전기 구매비용, 공사비(캐노피, 볼라드, 스토퍼 등 부대시설 포함), 한전불입금, CCTV(열화상카메라 포함) 등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② CCTV(열화상카메라 포함) 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을 비추는 전용시설인 경우만 해당하며 화재 감시가 가능해야 함

< 2025년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최대 지원단가>

충전기 구분	보조금 최대 지원단가(만원)
① 30kW 이상 충전기	700(1기), 600(2기), 500(3기 이상)
② 11kW 이상 충전기	240(1기), 220(2기~5기), 200(6기 이상)
③ 7kW 이상 충전기	(신규) 220(1기), 200(2기~5기), 180(6기 이상) (교체) 110(1기), 100(2기~5기), 90(6기 이상)
④ 전력분배형 충전기	①~③ 용량별 지원단가에 케이블 1기당 30만원씩 추가 지원

- 비고 1)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충전시설 설치 신청자 등이 부담함
- 2) 전력분배형 충전기는 본체에 추가되는 케이블 1기당 30만원을 추가하여 지원하며, 동시에 모든 케이블에서 충전시 합산한 총 용량에 해당하는 충전기 보조금 지원 (단, 동시 충전시 최소 충전용량은 3kW를 초과할 것)
- 3) 소상공인이 영업용 전기차(화물, 택시 등) 충전을 위한 충전기를 외부에 개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④ 단가의 70%를 지원함(ex: 11kW 112만원, 7kW 98만원)

4. 충전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집행 절차

1) 기본원칙

- ①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충전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보조금 지급대상 충전기로 등록해야 한다.

1. 「전기사업법」
2. 「전기안전관리법」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53조의2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1.17

6. 충전기와 관련된 국가표준 등
 7. 「스마트 제어 충전기 배터리 정보교환 프로토콜 (ISO/IEC 15118) 및 시험 기술기준」과 「스마트 제어 충전기와 충전기 관리시스템간 정보교환 프로토콜(OCPP 1.6) 및 시험 기술기준」
 8. OCPP1.6 인증서(운영시스템 Full Certificate, 충전기 Subset Certificate)
 9. 기타 충전기 설치에 필요한 법령 및 규정
 10. 지하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 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CCTV(열화상카메라 포함) 설치
- ② 사업수행기관은 설치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시 보조금 지원대상 충전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설치를 진행해야 하며, 설치공사 개시는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수행기관은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가 한국환경공단에 접수승인된 후 4개월 이내에 충전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 ④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설치 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협의 없이 기한 내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시설에 환경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임을 알리는 표시, 불편민원신고센터 QR코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표시내용, 방식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다.

2) 충전시설 설치 신청

-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용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운영 주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사업수행기관과 충전기 설치 수량을 선택한다.

3) 사전 현장 컨설팅

- ①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시설 설치 신청자로부터 설치 신청을 접수하고 7일 이내에 충전기 설치지점을 조사하고 설치 여부와 절차안내 등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등록해야 한다.
 - 사업수행기관은 사전 현장 컨설팅시 [별표 1] 기준에 따라 설치 대상 충전기와 수량을 정하고, 설치 여건 등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적절한 설치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 ② 충전시설 설치신청은 보조금 지원 자격 및 잔여물량, 충전시설 설치 가능 여부 등을 확인·검토한 후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를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충전시설 설치계약서

2. 건축물대장(90일 이내 발급분)

- ※ 건축물대장에서 주차면수 확인이 안 되는 경우, K-apt 추가 증빙
- ※ 복합건물 중 주차장이 명확히 구분되어 같은 건축물의 다른 소유 주체들의 차량 이동이 어려운 주차장의 경우, 신청 주체는 주차면 증빙을 할 수 있는 공문 등을 추가로 제출
- ※ 건축물대장 및 K-apt 추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주차면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해당 지자체의 공문서 등)로 갈음 가능(건물 준공 후 제출)

3.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사업장 등의 사업자등록증

- ※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경우, 충전기에 대한 행위신고를 득한 자가 신청하고 준공시 행위신고증명서 첨부
- ※ 입주자대표회의가 없고 충전기에 대한 행위신고가 의무가 아닌 경우에는 충전기 설치 동의서(입주민 80% 이상 동의)

4. 전기차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소상공인 확인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소상공인 영업용 전기차 전용 충전기에 한함)

- ③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지원기준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에 공지하며, 충전시설 설치신청에 상당한 하자(중복신청, 잔여 물량 소진 등)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충전시설 설치 신청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 ④ 한국환경공단은 사전 현장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4) 충전시설 설치진행

- ① 사업수행기관은 원활한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등 [별표 3]에서 정하는 내용을 설계도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사업수행기관은 설계도서와 공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③ 사업수행기관은 설치 신청서가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되어 승인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설치 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다. 사업수행기관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충전기 수량, 모델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신청자에게 하자 보증서를 발급하고 [별표 5]의 주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수행기관이 [별표4]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충전 시설 설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⑥ 사업수행기관은 한국환경공단에 등록한 외주 모집대행사를 활용 하여 충전시설 설치 신청자를 모집하고, 이들 신청자의 충전기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외주 모집 대행사의 등록 및 관리 절차는 [별표8]를 준수해야 한다

5) 충전시설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① 충전기 설치 신청자는 설치가 완료되면 한국환경공단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설치완료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사업수행기관에서 대행 가능함)

※ 다만, 소상공인 영업용 전기차 충전시설은 각호의 증빙서류 중 제1호, 제3호 준공서류 중 충전시설 정보 및 사진 대장, 제5호 홈페이지 연동 여부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또는 사용전점검확인증
2. 하자보증서
3. 준공서류

가. 설치도면(도면 목록표, 전력 배치도 및 전력 설비 평면도, 전력간선 계통도, 수배전반(계량기함) 결선도)

나. 충전시설 정보(설치일자, 주소, 위도 및 경도, 한전고객번호, 충전시설 용량, 하자보증 만료일, 충전요금, 충전사업자명, 충전시설 소유자명)

다. 사진 대장(시공 전·후 전경, 기설분전반, 충전기분전반, 전기 인입 부터 충전기까지 배관, 충전기별 모델번호 및 인증번호(일련번호), OCPP 1.6 인증번호, 접지저항 및 충전기별 절연저항, 스톱퍼·볼라드, 캐노피, CCTV(열화상 카메라 포함), 충전기 사용 안내 표지판)

라. 정산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공사내역서 등)

마. 행위신고증명서

4. 사업수행기관에서 설치신청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5. 홈페이지 연동 여부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지도에서 충전기 사용 가능 상태 화면 등을 첨부

- ②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수행기관의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신고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사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필요시, 충전시설 현장조사는 적정능력을 갖춘 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③ 한국환경공단은 완속충전시설 보조금을 설치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하되, 필요시 해당 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수행기관 명의의 계좌로 보조금 지급할 수 있다.
- ④ 한국환경공단은 설치를 승인한 충전기에 대하여 승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효력이 있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지원액의 7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선급금은 충전시설 설치공사가 개시된 경우에만 지급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기간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선급금은 환수한다.

5. 권한의 위탁

- ①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충전시설 구축 관련 보조금 집행과 정산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사업수행기관 등록, 충전시설 관리, 보조금 집행과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③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는지 지도·감독해야 한다.

6.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1) 보조금 관리대장

- ①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사업수행기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충전시설 보조금 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는 보조금 집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업수행기관 등의 보조금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중복지원 금지

- ① 완속충전시설이 이미 설치된 경우, 해당 지점의 최대 충전시설 지원 한도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 수량을 차감하여 지원 한도를 책정한다.
 -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공용 완속충전시설을 철거, 이설한 경우에도 해당 수량만큼 최대 충전시설 지원한도에서 차감하여 지원 한도를 정한다(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별표1 참조)
 - 단, 이미 설치된 충전시설이 개인용 또는 특정 차종으로 한정되는 경우는 지원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② 충전기 설치 신청자가 이미 설치된 수량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신청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거나,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1. 기본원칙

- ① 사업수행기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설비 기술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시설을 운영·관리해야 한다.
- ② 보조금을 지원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충전시설 소유자 및 사업수행기관은 최소 5년간 해당 충전시설을 운영·관리해야 한다.
- ③ 충전시설 소유자가 5년 이내에 충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의도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아래 표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건물철거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충전시설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2개월 미만	4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40%	30%	20%	10%

- ④ 사업수행기관은 5년 이내 충전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지체없이 알려야하며, 다른 사업수행기관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운영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 5년간의 충전시설 운영·관리 이후에도 사업수행기관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충전시설의 관리 의무는 사업수행기관에게 있음

- ⑤ 사업수행기관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충전시설의 이용정보 및 상태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는 통신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운영신고

- ① 사업수행기관이 충전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1. 충전시설 설치 지점의 명칭
 2. 충전시설 설치 지점의 좌표(위도, 경도)
 3. 충전시설 제품명과 주요 제원에 관한 사항
 4. 충전시설 사용요금
 5. 기타 한국환경공단이 요청하는 사항
-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충전시설을 고장 및 철거 등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충전시설 운영을 중단하게 된 때에는 한국환경공단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충전시설 고장 등 충전시설 상태에 관한 정보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고장 사실을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철거 시에는 공단에 즉시 문서로 통보하여 철거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사용요금 등의 책정

- ① 사업수행기관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공용충전시설의 충전요금을 산정하는 경우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
 2.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다 공공서비스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
 3. 다만,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4.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하여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제2호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요금을 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등록해야 한다.

4. 충전시설 이용정보 및 상태정보 공유

- ① 사업수행기관은 누구든지 해당 충전시설(국가로부터 자금을 보조 받지 않고 설치한 충전시설 포함)을 확인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 1. 충전시설 위치(주소, 위도·경도), 상태정보, 이용 가능자 범위, 충전소명
 - 2. 충전시설 기기번호, 충전일자
 - 3. 충전 시작시간, 충전 종료시간
 - 4. 충전 전력량(kW), 충전요금
 - 5. 충전 중 전기차 및 배터리 상태정보 등(전기차 VIN(또는 배터리 팩 ID), 배터리 충전정보(SOC), 열화정보(SOH), 배터리 셀전압, 팩전류, 모듈온도 등)
- ②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중 수집한 전기차 및 배터리 상태정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실시간 전송하고, 취득하여 보관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위반시 적발일로부터 5년간 사업수행기관에서 배제)
- ③ 사업수행기관은 공동주택, 학교 등에서 사용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위치 및 상태정보를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 가능자의 범위를 안내하여 충전시설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의 각 호의 정보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연속하여 3일 이상 제공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사업수행기관 공모에 제한받을 수 있다.
- ⑤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사업수행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공용충전시설 공동이용

- ① 사업수행기관이 충전시설(충전시설 보조시설 포함)을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사업수행기관에서 발급한 카드로 회원 여부를 인식하고 충전요금을 지정된 계좌 또는 지정된 신용카드로 사후 결제하는 경우에도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회원카드를 함께 사용(이하 로밍)할 수 있도록 회원정보 공유, 결제시스템 연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원정보 공유, 결제시스템 연계 등 충전시설 공동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정한다.

6. 유지·보수체계

- ①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시설에 비상연락처를 부착하는 등 이용자가 고장 사실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② 한국환경공단은 충전시설 이용중 이용자의 불편 민원을 접수하고 조치하기 위하여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사업수행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시스템에 불편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불편 신고 내용이 연동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③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시설 이용자가 고장 신고, 이용 문의를 할 수 있도록 24시간 민원 응대서비스(콜센터 등)를 제공해야 한다.
- ④ 사업수행기관은 콜센터 등에서 고장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최대 48시간 이내) 현장에 출동하여 충전시설을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는 점검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 ⑤ 충전시설 수리는 현장에 출동한 즉시(최대 24시간 이내) 조치해야 하며, 부품 교체 등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 ⑥ 최근 1년간 응대서비스(콜센터 등) 운영, 고장신고 조치 등 유지·보수 의무를 3회 이상(한국환경공단 불편신고센터,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건에 한함)으로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업수행기관은 다음 연도 사업수행기관 공모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⑦ 사업수행기관은 한국환경공단에 충전시설 고장 현황 및 사유,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조치를 못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충전시설 설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 ⑧ 사업수행기관은 충전 중 전기차 고장 등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보상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상, 조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7. 정기점검

- ① 사업수행기관은 운영 중인 충전시설에 대하여 [별표 6]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기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를 7월(상반기), 다음 연도 1월(하반기)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제출)해야 한다.
-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보존해야 한다.
- ③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수행기관에서 운영 중인 충전시설에 대하여 [별표 6]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8. 충전시설의 공동관리

- ① 사업수행기관은 효율적인 충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6.유지·보수체계', '7.정기점검'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타사업자와 공동으로 이행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②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사업수행기관의 충전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보고와 검사

- ①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보조사업 집행 및 예산집행실적(정산내역서 포함)을 당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게 충전소를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은 사업수행기관에서 이 규정 및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은 사업수행기관이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완속 공용 충전시설 설치수량 산정방법 및 제품 결정기준

2.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현장조사 검토항목
3.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방법
4.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절차 및 방법
5. 충전시설 사용시 주의사항
6. 완속충전시설 사업수행기관 정기점검 항목
7. 사업수행기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8. 외주 모집 대행사 등록 및 관리절차
9. 스마트 제어 충전기 세부 설치기준

[별지 서식]

1. 사업수행기관 공모 지원 신청서
2. 사업수행기관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3. 신청 제안서 평가항목 조건표
4. 정량평가 항목 자체 점검 점수표
5.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신청서
6.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 설치·이용 승낙서
7. 사전 현장 컨설팅 결과서
8.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9. 충전인프라 구축실적 관리대장
10. 충전시설 보조금 신청대장

[별표 1]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수량 산정방법 및 제품 결정기준

- 해당 장소에 기 설치된 충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주차면수의 5%까지 지원
- 해당 장소에 기 설치된 충전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수량에서 기 설치된 모든 충전기의 수를 제외
 - ※ 설치 가능 수량은 계산 후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처리한다.
 - ※ 전력분배형 충전기는 충전 케이블 수를 곱한 수만큼, 과금형콘센트는 4를 곱한 수만큼 지원 가능하다.
 - ※ 이미 설치된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는 1기로 산정하고, 키오스크 충전기는 2기당 1기, 전력분배형 충전기는 충전 케이블 수량과 무관하게 1기로 산정한다. 단, 이미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자가 소유자 또는 특정 차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충전기는 기 설치 수량에서 제외한다.
 - ※ 소상공인의 영업용 전기차 화물·택시 충전시설은 수요자 기준 최대 1기까지만 지원가능

[별표 2]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현장조사 검토항목

1. 주변 환경

가. 침수, 빗물 합류, 배수불량, 역류 등 강우·강설에 의한 영향이 없는 장소

1) 주변 수로·하수구·배수구 등의 여건 검토

2) 설치지역의 우수역류, 침수발생, 폭설 등 기상재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과거 기상기록 검토

나. 동절기 적설 예상 장소 등 다습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장소

다. 하천 복개장소, 우수, 하수 관로의 상부 등 충전시설 하부로부터 증발수분 유입 우려가 없는 장소

라. 분진, 부식성 가스, 폭발성 가스가 생성되거나 체류하지 않는 장소

1) 주유소 및 위험물·고압가스 저장소 인근, 건축물 설치제한지역, 도심경관 관리 지역의 경우 설치제한 및 준수하여야 할 규정 여부 검토

마. 진동이나 충격이 발생되지 않고 충전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열체가 없는 장소

바. 충전시설 사용 시 발생하는 열의 발산이 용이한 장소

사. 관로, 배관, 배선 등의 지하 지장물이 없고, 있을 경우 이설, 제거 가능한 장소

아. 실내 또는 눈비를 막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장소에 설치하여 캐노피 등 부대시설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소

자.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75호)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 및 장소에 대한 검토

2. 전원 및 통신 환경

가. 전기 인입조건이 양호한 장소

1) 별도로 한전 인입을 할 경우, 거리 및 인입방법(가공, 지중)에 따라 인입비용이 달라지므로 인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검토

가) 설치할 충전시설유형(완속, 급속, 콘센트)에 따라 인입방법을 결정, 별도의 한전 인입이 필요 없는 전원공급 유형(모자거래)을 우선 검토하되 변전실 여유전력을 필히 확인

나) 가공과 지중으로 전원공급을 할 경우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굴착, 포장과 같은 부대 공사가 필요 없고, 가선거리가 짧아지는 지점으로 검토

다) 급속충전시설 설치 시 전기인입을 가공과 지중으로 할 경우 한국전력에 문의필요(인입전원 저압 380V, 3상, 수전용량은 50kW이상)

나. 무선통신 음영지역이 아닌 장소

- 1) 충전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하여 전파 통달이 불가능한 장소(금속제 합체 내부와 같은 곳) 및 무선통신 음영지역에 설치는 피하도록 함

3. 이용 환경

가.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시설 인지가 쉽고, 주차 및 차량 출입이 용이한 장소

- 1) 기둥, 벽면, 간판, 나무 등으로 인해 충전시설이 가려지지 않는 장소
- 2) 적절한 조명으로 충전시설 위치확인 및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는 장소
- 3) 건물의 구석 등 일반인이 설치장소를 찾기 어려운 장소는 배제

나. 필요시 충전소 인근에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가 가능한 장소

다. 전용 주차면 지정 가능한 장소 또는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는 장소

- 1) 충전시설 사용 시 1대의 차량이 해당 주차면적을 장시간 점용하여야 하므로 타 전기자동차의 진입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 충전시설을 배치하고 장기주차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라. 충전시설의 조작, 유지관리를 위한 설치 면적의 확보가 용이한 장소

- 1) 설치 소요면적은 충전시설의 원활한 이용과 점검 시 도어 개폐 등에 필요한 공간을 감안하여 주변시설과 일정거리의 이격 필요
- 2) 차량진입 시 충전시설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스톱퍼와 충전시설 보호시설 및 주변 충전시설과 일정거리 이격 필요

마. 폐쇄회로 카메라 또는 관리원이 있는 장소

- 1) 고의적인 충전시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곳이나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배제

바. 차량 통행에 불편을 끼치거나 보행자 안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장소

4. 기타

가. 현장조사 시 현장 관리자, 책임자와 협의사항을 가급적 회의록, 사진 등으로 작성·보관

[별표 3]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방법

1. 일반사항

- 가. 충전시설 설치관련 법령, 절차 및 현장조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치지점 주변환경 등 여건을 고려하여 누락 및 과잉 산출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나. 전원접속 지점에서 충전소까지 차단기 추가 설치여부, 배선방법, 전력공급설비(배전반) 결선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다.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75호)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 및 장소에 대한 검토

2.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사항

- 가. 설치예정지의 지장물 제거·이설 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포함여부 확인
- 나. 설치위치, 관로 포설경로의 지하매설물 확인
- 다. 전기안전시설 설치관련 내용 반영
 - 1) 충전시설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은 제외)와,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그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포함 (한국전기설비규정 241.17.2)
 - 2)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전함, 충전시설 외함 등의 시설물에 대한 접지를 고려
- 라. 이용자 보호 시설 설치여부 검토
 - 1) 충전시설 케이블에 의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고가 지원이나 트롤리 시스템의 설치를 고려
 - 2) 충전시설 이용 시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KS A 3011(조도 기준)의 “표 5 교통”에 따른 주차장의 기준에 적합한 조명설비를 설치
- 마. 옥외 설치 시 강우, 강설에 대한 설계 검토
 - 1)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곳은 충전기 설치를 피하고 강우 및 강설에 대하여 충분한 방수 보호등급(IP44 이상) 등을 갖는 기기를 설치(캐노피 포함)
 - 2) 충전시설 설치지점이 홍수 다발 지역에 위치할 경우는 구조물의 부양이나 붕괴, 측면 이동을 방지하도록 설계

- 3) 홍수 피해에 내구성이 있는 자재로 시공하고,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법 및 기준을 이용하여 부품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바. 부식, 감전, 화재, 폭발위험 회피방안 검토

- 1) 분진이 많은 장소, 가연성 가스나 부식성 가스 또는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부식이나 감전, 화재, 폭발의 위험이 없도록 설계(한국전기설비규정 242.2부터 242.5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사. 환기설비 및 환기설비 안내 표지판 설치여부 검토

아. 충전시설 보호장치 설치여부 검토

- 1) 충전 중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및 자동차 등에 의한 물리적 충격 발생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 설치여부 검토
- 2) 벽부형 충전시설은 바닥면에서 1.2m이상으로 설치 할 경우 생략 가능
(1.2m 미만 또는 물리적 충돌의 우려가 있을 경우 볼라드, 스토퍼 설치)
- 3)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CCTV(열화상카메라 포함)를 설치여부 검토
- 4) 과금형 콘센트는 제외한다.

3. 설계도서 작성내역

구 분		내 용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 사항을 상세히 기술		선택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 도록 표기		○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선택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인입 배치도	전력 배치도	1/100이상	○
		통신 배치도	1/100이상	선택
	계통도	전력간선 계통도		○
		통신 계통도		선택
	평면도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선택
		전력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상세도	충전시설설치 관련 상세도	1/100이상	○
		접지 설비 상세도	1/5이상	선택

[별표 4]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절차 및 방법

1. 관로공사(터파기, 되메우기)

- 가.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터파기 작업 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함
- 나.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 시 관로를 통해 기본적인 전기공사를 동시에 실시함
- 다. 되메우기 시 설치된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석재, 벽돌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 다짐하며 실시함
- 라. 지하관로시설 구간에 각종 굴착사업 등으로 인한 전기선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로 상단에 “주의 전기케이블”이라고 기재된 경고용 표시 테이프를 설치하도록 하며, 관로식의 경우 매설 깊이를 1.0m 이상, 매설 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는 견고하고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0.6m 이상으로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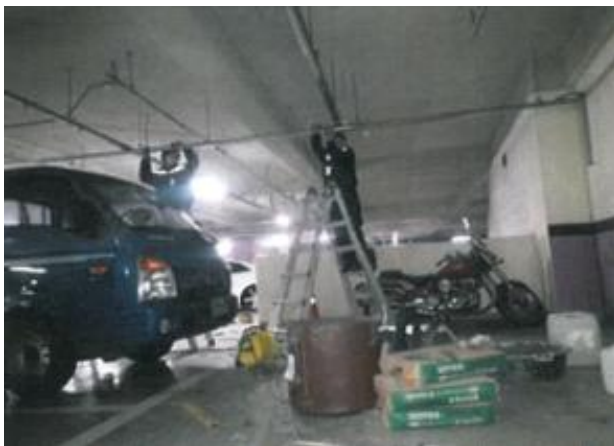


<토공사 예시>

2. 배관공사

- 가. 전선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부식성 금속관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합성수지관 등 KS 표시 공인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속품은 이제 적합한 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나. 노출배관은 외관상 미려하게 주위의 구조물과 평행 또는 직각이 되도록 배열하여야 하며,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도록 지지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함

- 다. 포설작업은 관련 제규정에 의하되 건축 구조물에 붙여서 시공하는 전선관은 구부린 부분이나 전선관의 지지점에 무리한 힘을 받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함
- 라. 옥측 또는 옥외에 설치할 경우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거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2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도록 함
- 마.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 단말부에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바. 분전반에 연결되는 전선관의 절단면과 분전반의 타공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부싱처리하여야 함



< 충전시설 설치사진 (실내) 예시 >

3. 접지공사

- 가.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 안전을 위해 접지 공사 시공은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40 및 142.7에 따른다
- 나.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접압설비의 접지대상시설 (분전함, 기계기구, 완속·급속충전기)의 접지저항은 100Ω 이하



<접지공사 예시>

4. 배선공사

-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갖는 것으로 하며,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 나. 충전시설 배선의 절연저항은 $1M\Omega$ 이상 유지하여야 함

5. 기초공사

- 가. 충전시설 설치 및 침수 방지를 위한 기초 하부 설치 공사 실시
 - 1) 기초공사시 충전시설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함



<기초 공사 (실내) 예시>



<기초 공사 (실외) 예시>

6. 전력공급설비 분전반 공사

- 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전력공급원(전기실)으로부터 전력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분전반을 설치할 하여야 함
- 나. 분전반과 충전시설 간의 배선 연결 및 단락·지락 보호 기능을 구비 하여야 함
- 다. 배선 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로 고정시키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 접속점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라. 분전반 외함은 일반인의 감전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상시 잠금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
- 마. 기설분전반에서 충전시설용 분전반까지는 과부하 및 단락으로부터 충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고 충전시설분전반에서 충전시설로 연결된 배선은 누전 및 감전 보호를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격용량이 배선의 단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바. 충전시설 분전반의 차단기 정격용량은 기설분전반의 차단기 용량에 비하여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 충전시설 분전반은 기설분전반내 메인차단기의 2차 측에 연결하도록 하며, 기설분전반에서 별도의 분기차단기가 없이 모선에서 직결하거나 메인차단기 2차 측에서 직결하는 등의 시설을 하지 않아야 함
- 아. 충전시설 분전반을 옥외에 설치할 경우 빗물 유입에 의한 절연불량, 단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SUS 등 비부식성 금속재질의 방수형 분전반을 설치하여야 함



<분전반 공사 예시>

7. 충전시설 설치

- 가. 기초공사를 완료한 후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충전 중 차량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자동차에 의한 물리적 충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호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함
- 나. 벽부형 충전기는 바닥으로부터 1.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설치 장소에 따라 불가피하거나, 물리적 충돌의 우려가 있을 경우 볼라드, 스토퍼 설치를 하여야 함
- 다.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CCTV(열화상카메라 포함)를 설치해야 함

※ 그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충전시설 설치전 전경(실외)>



<충전시설 설치후 전경(실외)>



<충전시설 설치전 전경(실내)>



<충전시설 설치후 전경(실내)>

※ 그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1.17 참조

[별표 5]

충전시설 사용 시 주의사항

1.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가. 충전시설 커넥터와 차량 인렛 부위에 물기가 있을 때
 - 나. 충전시설 전원이 차단되어 있을 때(사용자가 강제로 ON 금지)
2. 온도가 충전시설 규격에서 정한 사용온도보다 높거나 낮은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불가피 할 경우 적정 보완장치(히터 또는 냉각 장치 등)를 설치 하여야 한다.
3. 커넥터의 단자(금속부위)에 못 등 전기가 흐르는 물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날카로운 것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충전시설 유형(완속, 급속)에 따라 반드시 지정된 전기자동차 전용 배터리에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차량 이동 시 충전시설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며 충전시설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동작을 중지하고 제조사에 즉시 문의하여야 한다.
6. 충전시설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충격을 주지 말고, 충전중인 상태에서 차량을 동작시키지 말아야 한다.
7. 충전시설 커넥터는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꽂아야 하며, 분리할 때는 양손으로 커넥터와 인렛의 축을 정렬시켜 주의하며 분리해야 한다.
8. 충전시설 및 부대시설의 불필요한 접촉, 조작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9. 전력수요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하계는 13~17시, 동계는 11~12시, 18~19시 충전은 가급적 피할 것을 권장한다.
10. 충전 중 플러그와 소켓의 강제분리를 금하며, 충전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충전 취소 버튼을 누르고 사용자 카드로 충전을 중지한 후 플러그와 소켓을 분리한다.
11. 충전 중 세차(가벼운 물걸레 세차 가능), 정비 등 차량 유지보수 작업 금지한다.
12. 충전시설 외관상 손상 발견 시 충전시설 제작사로 연락하여 조치한다.
13. 충전 중 어린이가 주변에 있을 경우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하다.
14. 폭풍,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칠 때는 충전시설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충전시설 커넥터는 차량과 분리하여 거치대 문을 닫고 보관해야 한다.
15. 충전시설을 청소하기 위해 물을 분사하거나 화학물질, 세제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별표 6]

완속충전시설 사업수행기관 정기점검 항목

점검일자 : 2025년 월 일 주변 온도/습도 : ℃ %RH 점검자 :

기본 정보 확인(<https://www.ev.or.kr/portal>, 제공된 Data)

충전소 이름 :	위치 : 지상 층, 지하 층, 기타 :
충전기 제조사 :	충전사업자 :
충전소 좌표확인 :	충전기 총수 : 총수량 (사용가능, 사용중, 사용불가, 상태미확인)
충전소 주소 :	충전기 : 전압 V / 용량 kW
충전기 설치 유형 : 스텐드형 · 벽걸이형 · 이동형 · 기타 () 충전기	
“상태미확인”현장 확인 결과	화면/터치/통신/카드/충전/차단기/전원/간헐오류/커넥터/기타

적합성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개방 여부	Y / N	이정표 설치 여부	Y / N	적정공간 확보	Y / N
쉽게 접근가능	Y / N	(완속,급속) 표시	Y / N	무료주차	Y / N

환경성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주위온도 적정성 옥내:-5℃ ~ +40℃ 옥외:-25℃ ~ +40℃	Y / N	미끄럼방지 여부	Y / N	침수방지 등	Y / N
분진,가스등에 안전	Y / N	환기 적정성	Y / N	진동,발열체에 안전	Y / N
발열대비 개방성	Y / N	눈,비에 안전	Y / N		

편리성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홈페이지 연동여부 (www.ev.or.kr)	Y / N	적정 조명 (기준조도:40lx)	측정값	환경부카드 사용가능	Y / N
충전시설 위치	Y / N				
상태정보 확인	Y / N				
스토퍼,볼라드 등	Y / N	CCTV(관리원)	Y / N	차량,보행자 통행안전	Y / N
터치스크린 정상여부	Y / N	비상정지버튼	Y / N		
환경부카드 외 결제방식	(신용카드,QR코드,앱 등)모든가능 방식 기록				

제품안전성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발청,누수,녹발생	Y / N	커넥터균열,파손	Y / N	충전기 변색	Y / N
볼라드/스토퍼 고정	Y / N	보호잠금장치 정상	Y / N	충전기패드 정상고정	Y / N

전기안전성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시설의 적정성		배선의 적정성		차단기 적정성	측정값
빗물등에 안전	Y / N	적합한 케이블 사용	Y / N	과전류 차단기 정격	P A
사람 접촉에 안전	Y / N	금속부분은 접지	Y / N	누전 차단기 정격	P A
위험표지 여부	Y / N	케이블의 손상	Y / N	감도전류/동작시간	mA/ sec
분전함 LOCKING	Y / N			전선의 굵기	mm ²
분전함 접지선	Y / N				
계량기 점검 용이	Y / N				
차단기 정상동작	Y / N	분전함 결선상태 정상	Y / N	케이블 조임상태 정상	Y / N
접지공사 적정성	측정값	절연저항 측정	측정값		
접지저항 값	Ω				
접지선의 굵기	mm ²				
분전반, 충전기 외함	2.5mm ² 이상				
충전 케이블	0.75mm ² 이상				

소방안전성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소화기 비치	Y / N	비상시 신속대피 가능	Y / N	스프링클러 설치	Y / N
화재감지기 설치	Y / N	CCTV(또는 열화상카메라 설치)	Y / N		Y / N

유지보수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고장시 비상연락처	Y / N	AS센터 연결가능	Y / N	고장시 표시등	Y / N
주위 정리정돈	Y / N	불편민원신고센터 연결가능	Y / N		

충전작동(실차)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차량 충전 작동	Y / N	충전 속도 정상	Y / N	비상정지버튼 작동	Y / N

충전작동(실차, 데이터연동 확인)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데이터 공유 적합성	Y / N				

종합의견

점검표에 의한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 필요한 사항
점검표에 없지만 점검하면서 추가적으로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사진자료

구분	충전소 전경 (충전기 및 주위 전경)	구분	충전기
구분	분전반 외부	구분	분전반 내부
구분	기타, 블라드 정상설치 여부	구분	기타, 연결볼트 정상 여부

【별표 7】

사업수행기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가.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기본 항목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경영상태(5)	1. 기업 신용평가 등급	5	정량적 평가 (35)
사업관리(20)	2. 충전서비스 운영실적	5	
	3. A/S 및 콜센터 인력	15	
이용편의(10)	4-1. 충전기 공동이용 체결 협약사 수	5	
	4-2. 공동 이용 평균요금	5	
사업수행 부문(30)	5.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10	정성적 평가 (65)
	6. 사업수행 조직구성 및 전문성	5	
	7. 충전기 운영·관리 시스템 우수성 ※ 환경부 무공해차통합누리집과 충전기 위치·상태·이용정보 등 연계 여부 포함	10	
	8. 네트워크의 보안관리 실태	5	
유지관리 부문(20)	9. 충전시설 점검 및 관리방안 ※ 고객센터,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 현황, 운영중인 충전시설의 고장율 및 평균조치기간 등 포함	10	
	10. 고객지원 및 사후관리	10	
충전기 및 충전서비스 (15)	11. 충전기 우수성 및 안전 기능	5	
	12. 충전기 이용 편리성	5	
	13. 충전서비스 및 사용자 혜택	5	
합 계		100	

2. 가·감점 항목

(1) 현장 점검결과 및 공사기간 준수율

공단에서 실시한 충전기 운영실태 현장점검 사업자별 평가결과에 따른 구간으로 점수를 산정(±2)

평가결과에 따른 구간 구분	점수
사업자별 평가결과 상위 20%	+2
사업자별 평가결과 상위 21~40%	+1
사업자별 평가결과 상위 41~60%	0
사업자별 평가결과 상위 61~80%	-1
사업자별 평가결과 상위 81~100%	-2

※ 해당 항목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가·감점을 0점으로 한다.

※ 신규사업자란 최근 3년('22년~'24년)간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력이 없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공사기간 준수율

평균공사 기간과 보조사업 지침에 따른 공사기간(4개월)을 비교하여 산정(-2)

평균 공사기간	120일 이하	120일 초과 180일 이하	180일 초과 210일 이하	210일 초과 270일 이하	270일 초과
감점	0점	△0.5점	△1.0점	△1.5점	△2

(3) 불편민원 신고센터 민원 미조치

불편민원신고센터 등 민원제기에 대한 기한내 미조치(-2)

기한내 미조치 비율	조치완료	20% 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초과
배점	-	△0.4점	△0.8점	△1.2점	△1.6점	△2.0점

※ 【기한내 미조치 비율 = 제기된 민원의 기한(48시간 이내) 내 미조치 건수 / 제기된 민원의 전체 건수 × 100】 으로 산정

※ 제기된 민원의 기한내 미조치 건수는 공모에 참여한 사업수행기관이 전년도 불편민원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기된 민원(충전기 고장 등)에 대한 조치가 48시간을 초과한 경우로 산정(부품 교체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4) 보조금 지침 준수사항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침에서 요구하는 인증 또는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허위로 보조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설치한 충전기 수량에 따라 차등하여 감점 부여

설치수량	50기 미만	50이상 ~ 100기 미만	100기 이상
배점	△3.0	△6.0	△8.0
※ 공모에 참여한 사업수행기관이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침에서 요구하는 인증 또는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허위로 보조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설치한 충전기 수량에 따라 차등하여 감점 부여 ※ 급속 또는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사업수행기관이 포함된 제안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충전기(완속, 급속) 사업에 무관하게 감점대상에 해당			

나. 정량평가항목 평가기준

1.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4)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2. 충전서비스 운영실적(5점)

2-1. 기존 사업수행기관의 경우(완속충전시설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운영실적(완속충전기 설치수량)	점수
500기 이상	5
300기 이상~500기 미만	4
100기 이상~ 300기 미만	3
100기 미만	2

2-2. 신규 사업수행기관의 경우(완속충전시설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운영실적(완속충전기 설치수량)	점수
100기 이상	5
60기 이상~100기 미만	4
20기 이상~ 60기 미만	3
20기 미만	2

- 1) 충전서비스 운영실적은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마감일까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충전기 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사업자가 6개월 이상 직접 운영 중인 충전기만 실적으로 인정함.
- 2) 운영 중인 충전기 수량 산출은 **완속충전기 기준으로 산정**하고, 충전기 유형별로 완속충전기로 변환하는 수량은 키오스크 충전기는 2기당 완속 충전기 1기, 과금형 콘센트는 4기당 완속충전기 1기, 급속충전기는 1기당 완속충전기 10기로 산정한다.

3. A/S 및 콜센터 보유인력(15점)

3-1. A/S 보유인력(10점)

서울권, 인천·경기권, 대전·세종·충남권, 충북권, 강원권, 광주·전남권, 전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제주권 10개 권역에 A/S인력배치하고, A/S총괄은 반드시 사업수행기관이어야 하며, 직접 운영 또는 위탁운영할 수 있음

구분	권역별 10인 이상	권역별 8인 이상	권역별 6인 이상	권역별 4인 이상
점수	2	1.8	1.6	1.4

- 1) 평가는 권역 당 점수배점에 따라 산정한 후 10개 권역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해당 권역에 A/S인력이 3인 이하일 경우 해당 권역은 0점처리 ($\sum(\text{권역 당 점수})$),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한다.
- 2) 재직증명서, 4대 보험 등 A/S 인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10개 권역에 협력업체 활용할 경우 계약서와 함께 협력업체 A/S인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3) 평가방법은 대표사만 평가한다.

3-2. 콜센터 보유인력(5점)

사업수행기관은 콜센터 인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운영중인 충전기 수량에 따라 추가 인력을 보유하여야 함

기본 보유인력	추가 보유인력		
	운영 중 충전기 1~1,000기	운영 중 충전기 1,001~2,000기	운영 중 충전기 2,000기 초과
5명	+3명	+4명	+5명

- 1) 추가 보유인력 미충족시 1명당 1점 감점 부여
- 2) 콜센터 위탁 운영시 1명당 0.5점 감점 부여

4. 충전기 공동이용(10점)

4-1. 충전기 공동이용 체결 협약사 수(5점)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충전사업자가 타 충전사업자(환경부 제외)와 공동이용을 환경부 이음서비스를 통해 공모일까지 체결한 실적

구분	10개사 이하	11~20개사	21~30개사	31~40개사	41개사 이상
배점	1	2	3	4	5

4-2. 공동이용 평균요금(5점)

충전사업자가 타 충전사업자(환경부 제외)와 환경부 이음서비스를 통해 공모일까지 체결한 공동 이용요금의 평균

※ 7kW이상~11kW이하 구간의 공동이용요금으로 산정하며 협약사가 41개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이용 요금이 낮은 순서로 41개 업체의 평균으로 산정 가능

구분	250원 이하	250원 초과~ 270원 이하	270원 초과~ 290원 이하	290원 초과~ 310원 이하	310원 초과
배점	5	4	3	2	1

라. 정성평가항목 평가기준

- 정성평가는 평가항목에 따라 가장 우수한 신청자를 1등급으로 하여 5등급까지 구분하며, 등급별 업체 수 배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 41개 업체이상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하여 적용함

<등급별 업체 수 배분 기준>

신청자수	등 급					신청자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참여업체수가 40개업체를 초과하는 경우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함

※ 다만, 용역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는 업체수의 배분을 조정할 수 있음

○ 각 등급별 배점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90	80	70	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별표8]

외주 모집 대행사 등록 및 관리절차

1. 외주 모집 대행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외주 모집 대행사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외주 모집 대행사의 명단이 변동될 경우 사업수행계약일 이전까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등록되지 않은 외주 모집 대행사를 통해 충전시설 설치신청자를 모집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설치신청서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지침 위반 사항 한국환경공단 접수 →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 소명(1차) → 한국환경공단 제한 사항 결정 및 결과 통지 → 사업수행기관 불인정 시 이의신청 → 심의위원회 개최(내부2인, 외부3인) → 사업수행기관 소명(2차) →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사업수행기관 이의제기 불가)
4. 외주 모집 대행사 및 소속직원은 한 개의 사업수행기관에만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에 외주모집대행사로 등록하지 않고 설치신청자 모집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3년간 모든 사업수행기관의 설치신청자 모집업무를 할 수 없다.

[별표9]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세부 설치기준

구분	사양
입력	- 상 선식 : 단상 - 정격전압 : AC 220V ± 10% - 정격전류 : 32A(7kW) / 50A(11kW) - 정격주파수 : 60Hz±1%
출력	- 상 선식 : 단상 - 전압범위 : AC 220V ± 10% - 전류(전력범위) : 32A(7kW) / 50A(11kW) - 정격주파수 : 60Hz±1%
충전방식	C-Type
충전규격	Type1 (SAE J1772)
차량통신 프로토콜	「스마트 제어 충전기 배터리 정보교환 프로토콜 (ISO/IEC 15118) 및 시험 기술기준」
서버연동 프로토콜	「스마트 제어 충전기와 충전기 관리시스템간 정보교환 프로토콜 (OCPP 1.6) 및 시험 기술기준」
IP등급	IP44
디스플레이	형식승인 기준에 부합하는 사양
사용온도	-25℃ ~ 40℃
인증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득한 충전기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에서 형식승인 또는 인증을 득한 충전기 ③ OCPP1.6 인증서(운영시스템 Full Certificate, 충전기 Subset Certificate)
성적서	「스마트 제어 충전기 배터리 정보교환 프로토콜 (ISO/IEC 15118) 및 시험 기술기준」 및 「스마트 제어 충전기와 충전기 관리시스템간 정보교환 프로토콜(OCPP 1.6) 및 시험 기술기준」 시험 성적서
충전제어 기능	충전기는 전기차 배터리 SOC가 100%일 때는 충전을 종료해야 하며 충전이 종료된 후에는 자동으로 재충전되지 않도록 재충전 방지 기능이 있어야 함 ※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 스스로 충전량 설정(충전기 또는 앱) 기능을 갖추어야 함

업데이트 기능	충전기 펌웨어 및 SECC(Supply Equipment Communication Controller) 업데이트를 위한 OTA(Over the Air)기능 ※ 충전사업자는 정보교환 프로토콜 및 충전제어, PnC, V2G 기능 등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이를 적용해야 하며, ISO 15118-20(VAS) 프로토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함
기타	제조물 책임 보험 가입

- 비고 1) 위 사양 외에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사양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
- 2) 정격전류의 경우 출력에 맞추어 변경이 가능
- 3) 정보교환 프로토콜은 암호화 등 기존 프로토콜에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기관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신청 제안서 목차

I. 제안 개요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재무상태
3. 주요 사업 내용
4. 조직 및 인원
5. 사업실적

III.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수행 계획
2. 사업수행 조직구성 및 전문성
3. 충전기 운영·관리시스템
4. 네트워크 보완관리

IV. 유지관리 부문

1. 충전시설 점검 및 관리방안
2. 고개지원 및 사후관리

V. 충전기 및 충전서비스

1. 충전기 우수성 및 안전기능
2. 충전기 이용의 편리성
3. 충전서비스

※ 제안서는 위 목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전체 분량은 100페이지 이내 작성.

사업수행 제안서 작성 지침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I. 제안개요	-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신청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사업자의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사업자의 제반 정보 및 주요 연혁	
2. 재무상태	- 사업자의 경영상태, 재무상태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사업수행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회계감사 보고서의 재무상태표 등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 제안자의 주요 사업 내용을 간략히 기재	
4.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 본 사업과 관련된 직접 참여인력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표기 (전문성 등 세부사항은 "사업관리부문"에서 평가)	
5. 사업실적	- 충전기 설치 및 운영실적(무공해차누리집 기준) - 가입 회원수 및 연간 충전공급량 등 실적	
III.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수행 계획	- 2025년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 사업추진 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적인 추진 일정 - 충전기 설치 및 운영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 관리방안 - 기타 제안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안 가능	
2. 사업수행 조직구성 및 전문성	- 충전기 설치 및 운영관리 전담 조직구성 및 업무 * 자체수행 및 외주 등 명확히 기술, A/S인력과 콜센터 인력은 담당 지역 등 구분 - 협력업체 협조 체계 등 - 사업수행 인력의 업무경험 및 전문성 * 투입인력은 성명, 소속, 직위, 입사연도,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현황, 4대 보험, 본 사업 참여임무, 최근 3년간 주요 경력 등 기술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자체·외부) 및 투자 등	
3. 충전기 운영·관리 시스템 (CSMS, Charging Station Management System)	- 충전기 운영관리 시스템 개요 및 구성도 - 충전기 운영관리 시스템 우수성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연계 현황 * 환경부 무공해차통합누리집과 충전기 위치·상태·이용정보 등 연계 현황 제시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연계가 불안전할 경우 대처방안 - 충전데이터 통계관리 현황 * 충전기별 일일 충전횟수, 충전량 등 충전시설 이용현황 분석 제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4. 네트워크 보완관리	- 충전시설 운영시스템 및 서버 등 보안관리 실태 * 방화벽, 침입방지, 가상사설망, 서버보안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	
IV. 유지관리 부문		
1. 충전시설 점검 및 관리방안	- 충전시설 점검현황(정기·긴급·특별점검 등 구분) * (정기점검) 정기적으로 충전시설에 방문하여 충전기 내·외부 이상 유무 점검 및 조치 (수시점검) 충전시설 이용 관련 불편사항 및 민원 접수 시 48시간 내 해당 충전소에 방문하여 상태진단, 원인분석 및 불편사항 해소 (특별점검) 명절연휴 대비, 태풍 및 장마기간 전후, 신규충전기 인수점검 등 충전시설 특별관리 - 운영중인 충전기 고장 및 불편신고 현황 및 대응체계 * 고객센터,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 현황, 운영중인 충전시설의 고장율 및 평균 조치기간 등 포함 - 운영중인 노후·저사양 충전기 교체 현황 등	
2. 고객지원 및 사후관리	- 콜센터 운영, 장애처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48시간 내 민원 처리 등 신속 처리 계획 등 포함 - 주요 부품에 대한 예비품 보유, 자재수급 기간과 구체적인 수리 방안 - 충전기 고장 무상수리 보증기간 및 적정 수리비용 등 - 충전요금 산정방식의 합리성 및 요금 적정성	
V. 충전기 및 충전 서비스 부문		
1. 충전기 우수성 및 안전 기능	- 충전기의 종류, 사양, 가격 등 - 충전기의 우수성, 안정성 및 내구성, 수리 용이성 등 * 충전기 사양서, 공인시험기관 인증 등 증빙 - 충전기 고장율, 주요부품 수리건수, 수리기간 등 - 충전시 화재 대비 안전대책 * (예) 화재 감지 및 경보 등 안전 기능,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2. 충전기 이용 편리성	- 충전기 조작 및 사용 방법 - 결제방법 편의성 및 다양성 * 현재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결제 방법 외 추가 결제방법 기술 - 기타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충전기 차별적 기능 - 공동이용(로밍) 현황 및 계획	
3. 충전서비스	-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사용료 연동 충전요금 - 캐시백, 요금 할인 등 사용자 혜택 등 - 충전서비스 확대 방안 등(홍보, 앱개발 등 활성화 방안)	

제안서 작성 지침 세부사항

- 가. 제안서 분량은 표지, 목차 및 간지를 제외 100쪽 이내(요약본의 경우 20쪽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흑백·컬러는 무관
- 나. 제안서는 기명으로 작성하고 파일(PDF)로 제출
- 다. 표지, 목차 및 간지는 쪽 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 라.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상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범위 이외의 항목은 필요 시 추가적으로 기술할 수 있음
- 바. 제안서는 교부한 제안서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
- 사. 제안서 및 평가서는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과 체계를 예시한 것이며 평가항목(목차) 및 작성내용과 방법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아. 제안서는 제안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관련 부속서류** 등은 **첨부**(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내용은 불인정)하며 제안서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
- 자.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점수 처리 또는 0점 처리

【별지 제3호 서식】 신청 제안서 평가항목 조건표

업체명	
-----	--

신청 제안서 평가항목 조건표

연 번	평 가 항 목	제 안서 해 당 페 이 지	증빙자료 유무
1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2	사업수행 조직구성 및 전문성		
3	충전기 운영·관리 시스템		
4	네트워크 보완관리		
5	충전시설 점검 및 관리방안		
6	고객지원 및 사후관리		
7	충전기 우수성 및 안전 기능		
8	충전기 이용 편리성		
9	충전서비스		

【별지 제4호 서식】 정량평가 항목 자체 점검 점수표

업체명

정량평가 항목 자체 점검 점수표

연 번	평 가 항 목	배점	자체 점검 점수	증빙자료 유무
1	기업 신용평가 등급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등급()	5		
2	충전서비스 운영실적 □ 기존 사업수행기관 □ 신규 사업수행기관 완속충전기 환산시 완속 충전기 ()기 → ()기 키오스크 충전기 ()기/2기 → ()기 과금형 콘센트 ()기/4기 → ()기 급속충전기 ()기*10기 → ()기 합 계 ()기	10		
3	A/S 보유인력 (01) 서울권: ()인 ()점 (02) 인천·경기권: ()인 ()점 (03) 대전·세종·충남권: ()인 ()점 (04) 충북권: ()인 ()점 (05) 강원권: ()인 ()점 (06) 광주·전남권: ()인 ()점 (07) 전북권: ()인 ()점 (08) 부산·울산·경남권: ()인 ()점 (09) 대구·경북권: ()인 ()점 (10) 제주권: ()인 ()점 합 계 ()점	10		
	콜센터 보유인력 < 운영중인 충전기 > □ 1~1,000기 □ 1,001~2,000기 □ 2,000기 초과 (8인) (9인) (10인) < 보유인력 ()인 > 미충족 인원: ()인 * -1점/인 = -()점 콜센터 위탁인원: ()인 * -0.5점/인 = -()점 합 계 -()점	5		
합 계		30		

연 번	평 가 항 목	배 점	자체 점수	증빙자료 유무
1	기업 신용평가 등급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등급()	5		
2	충전서비스 운영실적 ☐ 기존 사업수행기관 ☐ 신규 사업수행기관 완속충전기 환산시 완속 충전기 ()기 → ()기 키오스크 충전기 ()기/2기 → ()기 과금형 콘센트 ()기/4기 → ()기 급속충전기 ()기*10기 → ()기 합 계 ()기	5		
3	A/S 보유인력 (01) 서울권: ()인 ()점 (02) 인천·경기권: ()인 ()점 (03) 대전·세종·충남권: ()인 ()점 (04) 충북권: ()인 ()점 (05) 강원권: ()인 ()점 (06) 광주·전남권: ()인 ()점 (07) 전북권: ()인 ()점 (08) 부산·울산·경남권: ()인 ()점 (09) 대구·경북권: ()인 ()점 (10) 제주권: ()인 ()점 합 계 ()점	10		
	콜센터 보유인력 < 운영중인 충전기 > ☐ 1~1,000기 ☐ 1,001~2,000기 ☐ 2,000기 초과 (8인) (9인) (10인) < 보유인력 ()인 > 미충족 인원: ()인 * -1점/인 = -()점 콜센터 위탁인원: ()인 * -0.5점/인 = -()점 합 계 -()점	5		
4	공동이용 체결 협약사 수 ()개 ()점	5		
	공동이용 평균요금 ()원 ()점	5		
합 계		35		

【별지 제5호 서식】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설치 신청서

아파트/사업자명			보유 주차면수	면		
설치 희망지	☐ 공동주택 ☐ 사업장 ☐ 소상공인 ☐ 기타					
	도로명 주소 :					
신청자 (개인, 사업자, 공동주택 등)		해당내용 선택기재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주택 고유번호)		연락처		
사업수행기관명		모집대행사*	회사명	담당자명	연락처	
	*외주모집대행사의 영업직원은 사전에 한국환경공단에 등록된 자만 영업이 가능하오니 사업수행기관에 필히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	- 충전시설 소유자가 충전시설을 5년 이내 철거할 경우 본 지침의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조치합니다.					(서명)
주의사항	-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시설 설치 비용은 설치신청자 등이 부담함 - 『지방세법』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시에 취득세,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서명)
충전기 위치정보 표시 안내	- 모든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제한 없이 사용 가능토록 개방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위치, 상태정보 표시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더라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충전시설 위치, 상태정보, 이용 가능자의 범위 표시					(서명)
설치수량 및 요금	희망수량	구분	3kW 이상 ~ 7kW미만	7kW 이상 ~ 11kW미만	11kW 이상 ~ 30kW미만	30kW 이상 ~ 40kW미만
		스마트 제어	기	기	기	기
		키오스크	전력분배형			
		기	kW	기 (케이블 개)		
	결제방식	☐ 현장결제(비회원 결제가능) ☐ 후불청구(회원결제)				
	기타사항					
2025년도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서에 기입한 사항이 틀림 없음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 · 제공 동의서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 전기차 충전기 사업수행기관 (기관명:)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충전기 설치사업자) 충전기 설치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충전기 설치실적, 전산처리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별지 제6호 서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이용 승낙서

(충전시설 설치신청자와 설치장소 소유가 다른 경우 작성)

설치주소 (도로명)			충전시설 종류	공용충전시설
설치장소 소유자	성명		연락처	
	주소 (도로명)			
충전시설 신청자	성명		연락처	
	주소 (도로명)			
충전시설 설치사용 목적		전기자동차 이용을 위한 완속 충전시설 설치·이용		
충전시설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용개시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기간 중 충전시설 신청인의 계약만료로 인하여 더 이상 운영·관리가 어려운 경우 소유주가 충전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합니다.				(서명)
2025년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사업에 따라 위 설치장소에 대한 완속충전기 설치 및 충전기 이용을 승인하오니,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승인(설치승낙)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사전 현장 컨설팅 결과서

1. 신청자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2. 희망 충전시설 종류 및 수량 【구분: 스마트 제어()】					
3kW 이상 ~ 7kW 미만 ()기	7kW 이상 ~ 11kW 미만 ()기	11kW 이상 ~ 30kW 미만 ()기	30kW 이상 ~ 40kW 미만 ()기		
키오스크 충전기 ()기		전력분배형 충전기 ()kW ()기 케이블 ()개			
3. 주차공간 확보					
주차면 수		대			
4. 설치장소 및 환경					
장소	☐ 공동주택 ☐ 사업장 ☐ 소상공인 ☐ 기타 ()				
주소					
설치환경(확인 후 해당란에 체크)					
건물형태	설치위치	소유여부	소유주와의 관계	전력인입	설치타입
☐ 단독주택	☐ 실내, 지하	☐ 소유	☐ 본인	☐ 모자분할	☐ 벽부형
☐ 아파트	☐ 실외, 노상	☐ 임대	☐ 가족	☐ 한전불입	☐ 스탠드
☐ 연립주택			☐ 지인		
☐ 상가			☐ 직원		
☐ 기타			☐ 무관		
기타사항				주차공간 확보 ☐ (필수항목)	
5. 전기 수용 용량					
- 고압시 변압기 용량 확인				☐ 확인	
- 저압 경우 계약전력 확인				☐ 확인	
6. 중복설치 여부					
운영중 또는 설치예정	☐ 급속충전기(기) ☐ 전력분배형 충전기(기) ☐ 키오스크(기)		☐ 완속충전기(기) ☐ 과금형콘센트(기) ☐ 해당사항 없음		
7. 조사자					
상호			연락처		
성명	(인)		조사일	2025년 월 일	

【별지 제8호 서식】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설치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기관명)		(대표자)			
① 공동주택 고유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생년월일 등		전화번호	자택(회사) : 휴대폰 :		
설치 사업수행기관					
설치장소	☐ 공동주택 ☐ 사업장 ☐ 소상공인 ☐ 기타()				
	도로명 주소				
설치내역	구분	3kW 이상 ~ 7Kw 미만	7kW 이상 ~ 11Kw 미만	11kW 이상 ~ 30Kw 미만	30kW 이상 ~ 40Kw 미만
	스마트 제어	기	기	기	기
	키오스크 충전기		전력분배형 충전기		
	기		kW 기 (케이블 개)		
보조금 신청금액	원				
입금계좌	사업수행기관	은행명	계좌번호		
2025년도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구비 서류 : 지침에 명시된 서류					

【별지 제9호 서식】

충전인프라 구축실적 관리대장

연번	신청일자	충전기 종류	신청자	사업수행 기관	설치장소	실내/실외	설치기수	보조금액	지출일	보조 금액

【별지 제10호 서식】

충전시설 보조금 신청대장(월)

사업 수행기관	0000	설치가능대수 (설치능력/월)	000대	신청대수	000대			
연번	신청자	설치지역	설치장소 유형	소유자	충전기 용도	설치대 수	차량구 매여부	비고
1	00아파 트	서울	공동주택		부분공용	3	여	
2	길00	제주	공동주택	공동소 유	부분공용	2	부	
3	00주차 장	부산	기타		완전공용	3	부	